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관계부처합동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1. 26.(목)

교원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아동복지법」 상의 정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 무고성·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할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교원의 수사 대응 부담 완화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아동학대로 신고·고소당한 경우 조사·수사 대응의 전 과정을 밀착 책임 지원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최은옥)는 11월 26일(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경찰청(청장 김종철)과 함께,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교원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학생 간 다툼을 제지하는 등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학생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제기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도 오히려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아동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교원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부터 신속하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

현행 「아동복지법」 은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이 확립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기준'**을 「아동복지법」 상 제17조 정서적 학대 행위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현행 아동복지법 규정: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대법원 판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규정(2017도5769)

이를 통해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단순히 학생의 주관적인 불쾌감 등을 이유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오인해 신고 및 수사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원의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한계가 있기에, 교육부는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여 「아동복지법」의 적용에서 배제한다. 다만, 그 방법이 교육적 목적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학생의 신체·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한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각 호에 열거된 정당한 행위 보호

→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포괄적 보호, 예외 규정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함께, 교원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폭넓게 보호한다.

* 대법원 판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2023두37858)

3 교원의 수사 대응 부담 완화

법무부와 경찰청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 실무를 개선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교원을 상대로 한 '무고성 혹은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임이 명백하고, 신고 내용을 진실로 볼 자료가 없는 경우 등 신고 내용의 사실성을 판단한다. 혐의없음이 명백할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불입건)한다.

공소청 처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을 공소청 사건처리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복지부-법무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그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고소되어 무혐의 처리된 사례를 공유하여 조사·수사 단계에서 실무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화된 표준화안 마련 등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청 담당자 대상 연수를 강화한다.

4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 강화

이와 함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을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체계를 안착시켜 나간다. 학교 민원대응팀과 관할청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이 법제화('26.10.29.)된 것을 통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갈등 중재 및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로 기존의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외에 '학교 출입 제한*'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 다만, 학생보호 위해 긴급 출입 필요 시(예: 아픈 경우), 학교장 협의 거쳐 예외 허용

아울러,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도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 조사·수사 대응의 전 과정을 밀착 책임 지원한다. 외부 변호사 지원이 필요한 교원은 수사 단계 시 최대 500만 원, 심급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7년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상향: ('26년) 수사 단계 330만 원, 심급당 660만 원
→ ('27년) 수사 단계 최대 500만 원, 심급별 최대 1,000만 원 지원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행 상황의 점검(모니터링)을 위해 교육부-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도 지속 추진한다.

최은옥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은 "아동학대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두텁게 보호할 것이다.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현행 법률 규정(「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붙임 2】 2026학년도 1학기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주요 결과

담당 부처 <총괄>	교육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세은 (044-203-6480)
		담당자	사무관 민동영 (044-203-6494)
			연구관 김주숙 (044-203-6487)
			연구사 정재훈 (044-203-6492)
관계 부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김진옥 (044-202-3447)
			사무관 신제은 (044-202-3381)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책임자	과 장 차경자 (02-2110-3647)
		담당자	사무관 최소현 (02-2110-3852)
			법무관 김주환 (02-2110-4455)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권호석 (02-3150-2049)
		담당자	경 정 최진용 (02-3150-0923)
			경 위 김예진 (02-3150-28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현행 법률 규정(「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 11. (생략)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붙임 2 2026학년도 1학기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주요 결과

• (**대상**)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지원)청
• (**기간**) '26.3.1. ~ '26.8.31. (※ 작성 기준일 : '26.8.31.)

1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준, **교육활동 침해**는 '23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6년 1학기(2,214건)**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25건/1.1%)**

※ '25년 1학기 대비 학생은 감소(2,000건→1,980건), 보호자 등은 증가(189건→234건)

〈연도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단위: 건)

구분(학년도)	2024	2025			2026
		1학기	2학기	합계	1학기
심의 건수	4,234	2,189	1,845	**4,034**	**2,214**

※ 2024년 이후 수치는 「교원지위법」 개정(시행: '24.3.28.)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실적

2 학교급별 침해 현황

○ **학생 및 보호자의 전체 침해 비중**은 **중학교가 57.1%**(1,264건)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24.0%(531건), 초등학교 16.8%(373건) 순

※ **(학생) 중 1,185건(59.8%)** 〉 고 473건(23.9%) 〉 초 287건(14.5%) 〉 특수 30건(1.5%) 순

※ **(보호자 등) 초 86건(36.8%)** 〉 중 79건(33.8%) 〉 고 58건(24.8%) 〉 특수 6건(2.6%) 순

〈2026학년도 1학기 학교급별 침해 현황〉

학교급	침해 주체		
	학생(명/%)	보호자 등(명/%)	계(명/%)
유치원	3(37.5%)	5(62.5%)	8(100%)
초등학교	287(76.9%)	86(23.1%)	373(100%)
중학교	1,185(93.8%)	79(6.3%)	1,264(100%)
고등학교	473(89.1%)	58(10.9%)	531(100%)
특수학교	30(83.3%)	6(16.7%)	36(100%)
각종학교	2(100%)	0(0%)	2(100%)
기타	0(0%)	0(0%)	0(0%)
합계	**1,980**(89.4%)	**234**(10.6%)	**2,214(100%)**

3 침해 유형 및 침해 주체별 현황

○ (**학생**) 전체 1,980건 중,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등이 **614건(31.0%)**으로 가장 많고, **모욕·명예훼손** 580건(29.3%), **상해·폭행** 322건(16.3%) 순

○ (**보호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이 **86건(36.8%)**으로 가장 많고, **모욕·명예훼손** 20건(8.5%), **공무·업무방해** 17건(7.3%) 순

〈2026학년도 1학기 침해유형 및 침해주체별 현황〉

(단위: 건)

침해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합계
	상해 폭행	무고	협박	모욕·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영상·음성 등 촬영·녹화·녹음·합성 무단 배포	기타		
학생	322 (16.3%)	2 (0.1%)	50 (2.5%)	580 (29.3%)	8 (0.4%)	48 (2.4%)	15 (0.8%)	18 (0.9%)	139 (7%)	6 (0.3%)	614 (31%)	54 (2.7%)	47 (2.4%)	77 (3.9%)	**1,980 (100%)**
보호자등	3 (1.3%)	8 (3.4%)	13 (5.6%)	20 (8.5%)	0 (0%)	0 (0%)	3 (1.3%)	17 (7.3%)	0 (0%)	86 (36.8%)	3 (1.3%)	0 (0%)	22 (9.4%)	59 (25.2%)	**234 (100%)**
전체	**325 (14.7%)**	**10 (0.5%)**	**63 (2.8%)**	**600 (27.1%)**	**8 (0.4%)**	**48 2.2%)**	**18 (0.8%)**	**35 (1.6%)**	**139 (6.3%)**	**92 (4.2%)**	**617 (27.9%)**	**54 (2.4%)**	**69 (3.1%)**	**136 (6.1%)**	**2,214 (100%)**

4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현황 등

○ (**학생 조치**) 전체 1,980건 중, **출석정지**가 **692건(34.9%)**으로 가장 많음

* 출석정지 비중 증가 추세 : ('24) 27.7% → ('25) 29.3% → ('26.上) 34.9%

(단위: 건)

학년도	학생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조치 없음	기타	침해 아님	합계
2024	881 (23.4%)	715 (19.0%)	153 (4.1%)	1,044 (27.7%)	251 (6.7%)	328 (8.7%)	54 (1.4%)	130 (3.4%)	27 (0.7%)	190 (5.0%)	**3,773 (100%)**
2025	763 (21.1%)	696 (19.2%)	225 (6.2%)	1,059 (29.3%)	277 (7.7%)	246 (6.8%)	36 (1%)	155 (4.3%)		161 (4.4%)	**3,618 (100%)**
2026 1학기	383 (19.3%)	428 (21.6%)	70 (3.5%)	**692 (34.9%)**	132 (6.7%)	138 (7%)	10 (0.5%)	50 (2.5%)		77 (3.9%)	**1,980 (100%)**

○ (**보호자 조치**)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85건(36.3%)**,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77건(32.9%), 조치없음 13건(5.6%) 순

(단위: 건)

학년도	보호자 등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없음	기타	침해 아님	합계
2024	171 (37.1%)	110 (23.9%)	39 (8.5%)	21 (4.6%)	120 (26.0%)	**461 (100%)**
2025	154 (37%)	132 (31.7%)	33 (7.9%)		97 (23.3%)	**416** (100%)
2026 1학기	85 (36.3%)	77 (32.9%)	13 (5.6%)		59 (25.2%)	**234 (100%)**

※ 2025학년도 조사부터 「교원지위법」에 따른 항목으로 분류('기타'삭제)

○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 보호조치는 **총 2,992건**으로 **심리상담 및 조언(58.9%)**, **치료 및 요양(25.5%)**, 교사 희망으로 미조치(7%) 순으로 나타남

(단위: 건)

학년도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특별휴가 부여	법률지원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교사 희망으로 미조치	합계
2024	2,644 (56.3%)	463 (9.9%)	112 (2.4%)	2 (0.04%)	440 (9.4%)	1,036 (22.1%)	**4,697** (100%)
2025	2,879 (66.7%)	436 (10.1%)	130 (3%)	5 (0.1%)	108 (2.5%)	759 (17.6%)	**4,317** (100%)
2026 1학기	**1,762 (59%)**	**763 (26%)**			**254 (8%)**	**213 (7%)**	**2,992** (100%)

※ 2025학년도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권고 조치와 학교장에 의한 보호조치를 합한 수치이며 2026학년도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권고 조치만 집계함

※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한 명의 교원이 여러 개의 보호조치를 받은 결과를 포함함

5 시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 현황('26.10.20. 기준)

○ 교육(지원)청의 **상주 변호사**는 **74명**(시도당 4.4명), **비상주**는 **1,283명**(시도당 75.5명)으로, **총 1,357명('26.2월 대비 419명↑)**

※ 상주 : 시도교육청(2), 교육지원청(5), 교육활동보호센터(67) 총 74명
비상주 : 교육활동보호센터(902), 기타(381) 총 1,283명

6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

○ 제도 도입 후('23.9.25.~'26.8.31.)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321건**, 이 중 **1,719건(74.06%)**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교육감 의견서 제출

- '정당한 생활지도'로 제출한 사건**(1,719건)** 중 종결된 사안(1,323건) 기준, **경찰·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 건은 **93.04%**(1,231건)

* (경찰) 수사개시 전 종결(358건/27.1%), (검찰) 불기소(873건/66.0%)